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84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정성호·권칠승·박성준

윤후덕 • 이기헌 • 임광현

정준호 • 한정애 • 홍기원

황정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위헌·위법으로 확정된 행정입법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 행정청이 이를 곧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청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또한, 행정부에 대한 감독·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는바,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

전부장관 뿐 아니라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 행정입법의 위법성 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조 제목 및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국회,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관 행정청에"로 한다.

제6조(명령 · 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명령·규칙 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條(命令・規則의 違憲判決등	제6조(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公告) ① 行政訴訟에 대한 大	공고) ①
法院判決에 의하여 命令・規則	
이 憲法 또는 法律에 違反된다	
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大法	
院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u>행정</u>	국회,
<u>안전부장관에게</u> 통보하여야 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관 행정
다.	<u>청에</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